콘테니도 동아리 회칙

(시행 2024-04-01)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제3장 출석

제4장 징계

제5장 재정

제6장 개정

부칙

콘테니도 1기

회장	운영부	홍보부	기획부(스태프 + 정기모임)	
허은서	허종현(부장) 고준 최지인 이은상 전가은	허은서 (부장[임시]), ,박소현, 도정현, 강소혜, 김미진, 유서영, 최희주	스태프 A 팀 스태프 B 팀 스태프 C 팀 정기모임	이지선(팀장), 김나혁, 김현진, 김민수, 박희연, 신민수, 지은빈, 이초원, 조은진, 허승식, 최경환 이유빈(팀장), 손민우, 공지윤, 서영은, 심현지, 윤동현, 이병훈, 주희정, 위덕, 정수현, 박도훈, 오지윤, 원성현, 김예진 방지윤(팀장), 안성민, 권혜근, 정하윤, 한다연, 김은성, 나영수, 조해원, 배예슬, 박진우, 유원우 나유진(팀장), 정효경, 박민형, 송유진, 김아정, 강경모, 김지훈

제 1 장 총칙

제 1조(의의)

콘테니도(Contenido) 동아리는 오락 및 엔터테인먼트를 목적으로 리얼 버라이어티 컨텐츠 및 다양한 컨텐츠 기획과 이벤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동아리 활동 경험으로 사회적 성장과 지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체이다.

제 2조(성격)

콘테니도(Contenido) 동아리는 여러 대학교의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문화 컨텐츠 연합동아리이다.

제 3조(목적)

- ① 학생의 자기 적성의 발견을 위한 여가선용에 도움을 준다.
- ② 참여를 통해 사회성을 기른다.
- ③ 기획을 통해 다양한 소질의 개발과 성장에 도움을 준다.

제 4조(구성)

동아리의 구성원은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휴학생이외에 졸업생을 포함한다. 동아리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학생 신분만을받지만 그 이외의 자가 구성원이 되기를 희망한다면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동아리의 구성원은 회장, 운영진, 스태프, 참가자, 졸업자로 구성된다. 동아리의 구성원은 동아리 회칙을 잘 준수하고 지켜야 한다.

제 5조(활동)

- ① 스태프 기획: **한달에 1회** 실시된다. 스태프는 한달에 1회 이상 개인 또는 단체로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다. 스태프 기획 절차는 다음과 같다.
 - I. 1차 기획안 작성 및 제출
 - Ⅱ. 스태프 팀장 1차 심사
 - Ⅲ. 기획안 투표
 - IV. 이벤트 작업
 - V.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② 정규 이벤트: 한주에 1회 실시된다. 스태프들의 사정(학교 기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기획되어 만들어진 동적인 컨텐츠가 결합된 이벤트이다. 정규 이벤트 홍보 글에는 주제, 설명, 장소, 날짜, 참가비, 문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어야 한다.

정규 이벤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물 공표

[이벤트제목]

안녕하세요! 콘테니도 스태프 [] 팀입니다!

콘테니도의 []월 []주차 정규 이벤트 활동으로 '[]'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벤트 개요 및 목적]

일시: [] 월 [] 일 []시

장소: []

참가비: 7,600원

참가비 예산 목록 (예시) [생수(800원) x40개 = 32,000원 스케치북(8,900원)x5개 = 44,500원 간식(2,300원)x40개 = 92,000원 장소 대관비 = 112,000원 총 예산 : 280,500원 인당 7012.5원 == 7,100원

수수료 : 500원 총 참가비 : 7,600원]

모집 인원: 40명

[이벤트 추가 설명]

[모집 인원 미달 시 대처 방안]

[이벤트 참가 방법]

[이벤트 문의 사항]

- Ⅱ. 참가자 모집
- Ⅲ. 참가비 수금
- IV. 이벤트 실시
- V. 이벤트 정산
- ③ 정기모임: 한달에 1회 실시된다.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정적인 컨텐츠(보드게임, 토크쇼, 마술, 타로 등)로 정규 이벤트의 동적인 컨텐츠(운동회, 보물찾기, 런닝맨 등)와 대조적인 성격을 띤다.

- ④ 번개 모임: **상시** 번개 양식에 맞춰 동아리 구성원(운영진, 참가자, 스태프)은 원하는 주제의 컨텐츠를 주최할 수 있다.
- ⑤ 신입생 OT: **두 달에 1회** 실시된다. 동아리 신입부원 모집 이후 실시되는 이벤트로써 정기모임팀에서 주관하며 기존 부원과 신입부원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이다.

[번개 양식]

<번개모임 이름>

날짜 :

장소 :

인원:

마지막 한마디

ex) <술찌 접근금지 술꾼들의 술파티>

날짜: 4/00요일 저녁

장소 : 강남 oo 식당

인원: oo 몇

갠톡으로 참여하실 분 연락주세요.

- ⑥ 이벤트 설문조사 : 비정기적으로 실시된다. 동아리 구성원은 투표를 통해 동아리에서 실시되는 이벤트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다. 설문조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I. 향후 실시되는 정규 이벤트 및 정기모임의 장르 및 테마 수요조사

- Ⅱ. 동아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설문
- ⑦ 건의 및 문의 : 상시 동아리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실시된다.운영진을 통해 카카오톡 또는 동아리 내에서 사용하는 그 외의 의사소통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 ⑧ MT: **한학기에 1회** 실시된다.
- ⑨ 연말 이벤트 : **1년에 1회** 실시된다.

제 2장 조직

제 6조(모집)

- ① 동아리 부원의 모집은 격월로 운영진이 정한 기간에 따라 실시된다.
- ② 스태프 팀원 모집은 스태프 팀장의 요청 시에 결정된다.
- ③ 동아리 가입비는 **15,000 원**으로 규정한다.
- ④ 동아리 이탈자가 없는 경우 또는 동아리 부원의 충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격월로 이월된다.
- ⑤ 홍보 플랫폼 등을 통해 동아리 부원을 모집한다.
- ⑥ 제명된 부원일 경우에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가입이 결정된다.

제 7조(회원)

- ① 회장 : 동아리를 대표해 운영 및 관리한다.
- ② 운영진 : 동아리를 운영하는 운영진은 운영부, 기획부, 홍보부로 역할이 나뉜다.

I. 운영부

- i. 동아리의 회칙 및 동아리의 운영구조를 관리하고 총괄한다.
- ii. 동아리의 재정 및 공금을 관리한다.
- iii. 동아리 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의 건의사항 및 문제점 해결
- iv. 동아리 구성원을 모집 및 관리한다.
- v. 각 부서별과의 소통과 피드백을 연결한다.

Ⅱ. 기획부

- i. 스태프팀 : 정규 이벤트 및 MT를 운영 및 관리한다. 단, **스태프 팀장**만을 운영진으로 한정한다.
- ii. 정기모임팀 : 한달에 1회 실시되는 신입생 OT와 정적인 컨텐츠를 기획 및 주최한다.

Ⅲ. 홍보부

- i. 동아리의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 ii. 소통 플랫폼(인스타,유튜브 등)을 운영 및 관리한다.
- iii. 홍보 포스터, 카드뉴스를 제작한다.
- ③ 스태프 : 동아리의 정규 이벤트 및 MT를 기획하고 선정된 이벤트를 작업한다.
- ④ 참가자: ①, ②, ③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부원**으로 동아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에 참가한다.
- ⑤ 졸업자 : 동아리의 발전에 기여하고 동아리를 졸업한 부원

제 8조(회장)

권한 및 권리

- ① 동아리를 대표하며 동아리를 운영하는 운영진의 전권을 가지며, 모든 부서에 관여할 권한을 가진다.
- ② 운영진을 임명할 권한과 면직할 권한을 가진다.
- ③ 동아리 구성원에 대한 1차 징계권을 가진다. 징계 사유가 중대할 경우 운영진 회의 이후 해당 구성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회칙에 언급되지 않은 동아리의 일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운영부장의 동의에 따라 필요할 경우 회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⑤ 동아리 활동의 각종 행사의 진행과 계획, 평가 등의 권한을 가진다.
- ⑥ 필요한 경우 운영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회의에 소요되는 식비와 다과비에 한해 운영비에서 지출한다. 그 금액은 회의를 진행하는 회장과 회의에 참여한 운영진 부장(팀장)의 승인하에 결정된다. 단, 추후에 지출비가 합리적이지 않을 시에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일정 금액이 반환된다.

책임 및 의무

① 동아리를 대표할 의무를 가지며, 동아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에 대해 검토하여 부원자격을 유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의무를 가진다.

- ② 모든 징계 회의 소집 요청을 검토할 의무를 가진다.
- ③ 모든 운영진 회의 소집 요청을 검토할 의무를 가진다.

제 9조(운영진)

권한 및 권리

- ①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 운영진은 연임 가능하다.
- ② 운영부는 부서별 요청에 따라 운영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운영진 회의에 소요되는 다과비용 및 장소대여는 운영비에서 지출한다. 금액은 운영진 회의에 참가하는 각 인원 당 운영부의 승인하에 결정된다.
- ③ 운영진 회의 시 4인 이상인 경우에만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 운영에 성실히 활동한 운영진은 격월마다 운영진 회의를 통해 상품이 수여될 수 있다.

책임 및 의무

- ① 동아리의 발전을 위해 맡은 부서의 활동 및 역할에 성실히 임해야한다.
- ② 임기 도중 하차한 운영진은 그 즉시 운영진 자격을 박탈당한다.
- ③ 운영진 회의는 회장 또는 운영부장의 승인하에 결정되며 운영진 4인 이상인 경우에만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
- ④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정기적인 운영진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 ⑤ 운영진의 활동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회장을 포함한 운영진 회의를 통해 해당 운영진의 지위와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총무

- ① 동아리의 공금 및 재정을 관리한다.
- ② 동아리 재정 지출의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에서 보유한 자산 관리에 대한 전적인 권리를 갖는다.
- ③ 동아리 활동 지출과 수입을 정확히 기록할 의무가 있다.
- ④ 동아리 구성원의 재정내역 공개요청에 대해 재정내역을 정확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

서기

- ① 동아리의 활동 및 출석을 기록한다.
- ② 동아리 퇴출 2 주전에 단톡방에 퇴출 예정 인원을 고지한다.

제 10 조(스태프)

권한 및 권리

- ① 동아리의 정규 이벤트 및 MT를 기획할 권한을 가진다.
- ② 동아리의 정규 이벤트 및 MT를 주최 및 진행할 권한을 가진다.
- ③ 결과 보고서 및 참가자 후기를 통해 평점이 가장 우수한 이벤트 팀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된 상품 또는 상금이 수여된다.

책임 및 의무

① 한달에 1회 개인 또는 단체로 이벤트 기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 ② 스태프의 임기는 6개월로 정하며 연임 가능하다.
- ③ 기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A. 이벤트 주제
 - B. 이벤트 날짜
 - C. 이벤트 개요 및 목적
 - D. 필요 예산
 - E. 소요 시간
 - F. 진행 순서
 - G. 구체화된 이벤트 내용
- ④ 기획안 투표 기간에 자신이 기획한 이벤트 외에 1개 이상의 다른 이벤트를 투표해야 한다.
- ⑤ 자신이 투표한 기획안이 선정될 시 이벤트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 ⑥ 정규 이벤트 활동 종료 후 스태프 팀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⑦ 작성된 결과 보고서는 운영부에 제출해야 한다.
- ⑧ 스태프 팀장은 자신의 팀이 작업중인 이벤트의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지휘할 의무가 있다.

제 11 조(참가자)

권한 및 권리

- ① 동아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동아리내에 모든 시스템에 관해 문의 및 건의할 권리를 가진다.

③ 총무에게 재정내역 공개요청을 할 수 있다.

책임 및 의무

- ① 참가자는 **2 달에 1 회 이**상 정규 이벤트 또는 정기모임에 참가해야 한다.
- ② 2 달동안 이벤트에 참가하지 않은 참가자는 동아리에서 제명된다.
- ③ 활동기록은 격월마다 갱신된다. 예시) 7월 참가자는 9월 1일에 활동기록이 갱신된다. 7월~9월 1일 전까지 활동기록이 없을 경우 동아리 활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동아리 퇴출 경고는 2 주전에 단톡방에 고지된다.
- ⑤ 동아리에서 실시되는 모든 이벤트 활동 진행자의 이벤트 진행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⑥ 동아리 이벤트 활동 전 참가비가 청구될 경우 이벤트 참여자는 반드시 동아리용 계좌에 송금해야 한다.
- ③ 동아리 이벤트 활동 후 개인별로 정산이 진행될 경우 비용은 1/n 로 참가자에게 비용이 청구된다.
- ⑧ 동아리 이벤트 활동 후 팀별로 정산이 진행될 경우 비용은 팀별로 청구된다.

제 12 조(졸업부원)

- ① 동아리 내에서 활동하면서 다음 사항을 만족한 경우 자동적으로 졸업부원 자격이 주어진다.
 - I. 회장 활동

- Ⅱ. 부서별 부장 1년 이상 활동
- Ⅲ. 스태프 팀장 1년 이상 활동
- ② 운영진 회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자신이 맡았던 부서 및 팀의 권리를 가진다.
- ④ 이벤트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⑤ 졸업회원은 성별, 성 정체성, 종교, 신념, 인종, 국적, 나이에 대한 편향적인 사상과 차별을 강요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 ⑥ 졸업부원은 제정 또는 개정된 회칙을 따라야 한다.

제 13 조(탈퇴)

- ① 동아리 부원의 탈퇴는 본인이 원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고 그 즉시 부원자격을 상실한다.
- ② 운영진 회의 또는 징계 되어 제명된 부원은 운영진 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입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제 3 장 출석

제 14 조(인증)

- ① 동아리의 구성원은 동아리에서 실시되는 모든 이벤트 활동에 신청할수 있다.
- ② 정규 이벤트 및 정기모임에 불참을 희망할 경우 이틀 전에 반드시이벤트 진행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 ③ 이벤트 진행팀에게 당일출석을 인증하거나 이벤트 종료 후 진행되는 사진인증을 통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④ 이벤트에 참가하지 않고 당일출석 인증만 할 경우에는 불참으로 간주한다.
- ⑤ 이벤트에 참가하지 않고 사진인증만 할 경우에는 불참으로 간주한다.
- ⑥ 이벤트에 참가하였지만 이벤트 진행팀의 참가인원 명단에 없을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인증이 가능하다.

제 4장 징계

제 15 조(사고발생)

- ① 동아리의 모든 이벤트 진행 중 주최자(스태프 및 운영진)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의 책임은 주최자에 있다.
- ② 동아리의 모든 이벤트 진행 중 참가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의 책임은 참가자에 있다.
- ③ 동아리의 모든 이벤트 진행 중 동아리 구성원들 간의 사고 발생의 책임은 당사자들에게 있다.
- ④ 동아리의 모든 이벤트 진행(주최) 및 참여(참가)에 불참 및 방해할 경우 경고 1회 또는 경고 2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⑤ 스태프 및 참가자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및 동아리의 구성원들 간의 사고 발생 시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경고 1회 또는 2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 16조(물리적 및 정신적 폭력)

- ① 동아리 내에서 활동하는 동아리의 구성원은 상대방에게 물리적 및 정신적 폭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 ② 동아리 내에서 활동하는 동아리의 구성원은 정치, 종교, 인종, 이념에 치우친 언행이나 편향된 사상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 ③ 동아리 구성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운영진(회장 및 운영진)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경고 2회 또는 3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 18조(제명)

- ① 참가자는 2 달동안 정규 이벤트 또는 정기모임에 참가하지 않을 시제명된다.
- ② 누적 경고 3회시 동아리에서 퇴출된다.
- ③ 누적 경고의 초기화는 4개월로 규정한다.

제 5 장 재정

제 19 조(지출)

- ① 정규 이벤트, 정기모임, MT, 연말 행사 비용
- ② 운영진 회의에 필요한 운영비 (장소대관 및 다과 비용)
- ③ 동아리의 의사소통 플랫폼, 홍보 플랫폼, 운영관리 비용
- ④ 이벤트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스태프팀의 상품 또는 상금
- ⑤ 우수 운영진 상품 또는 상금

⑥ 동아리내 모든 이벤트의 우승자 상품 또는 상금

제 20 조(수입)

- ① 가입비 15,000 원
- ② 후원
- ③ 동아리용 계좌 예치금
- ④ 동아리 활용 플랫폼 (유튜브, 인스타, 네이버 블로그 등) 수입

제 6장 개정

제 21조(개정시기)

- ① 회칙은 회장을 포함한 운영진 회의를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다.
- ② 회칙은 회장 및 운영진 부장(팀장)의 2/3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2/3 이상이 찬성했을 경우에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의 제안은 총회 참석 인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발의한다.
- ③ 단, 총회 당일 회장 또는 모든 운영진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회장 및 운영팀장의 승인을 통해 위임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2 조(시행)

이 회칙은 2024년 4월 1일, 회장 및 운영진 부장(팀장) 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2024-04-01 제정

2024-05-01 개정

2024-06-09 개정

부칙

제 1 조

본 회칙은 제정 또는 개정 후 7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회칙 개정 내용에 따른 발표 시한에 대한 특별부칙을 둘 수 있다.

제 2 조

본 회칙이 대한민국 법률과의 충돌이 있을 경우 후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 3 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회칙에 명시되기 이전에 위반되는 사항에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